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15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서하윤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1. 31.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6160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서 2012. 5. 31. 3,000만 원(이하 '1채권'이라고 한다), 2013. 5. 22. 3,000만 원(이하 '2채권'이라고 한다), 2013. 9. 23. 7,000만 원(이하 '3채권'이라고 한다)을 각각 대출받았다. D은 2016. 6. 2. E와 F에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F은 2018. 3. 27. G에 C에 대한 1, 2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G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92066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20. 7. 23. 'C는 G에게 35,747,606원과 그 중 26,692,115원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06%, 622,722원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7.까지 연 11.8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는 2021. 8.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1. 12. 10.경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2021. 12.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61606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가, 같은 날 C와 피고의 각 지분에 관하여 합유로 변경하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순번	재산목록	가액(원)
1	양평군 H 대 812㎡	145,763,902 ¹⁾
2	1항 지상 주택과 제시외 건물, 수목, 관정	144,155,440 ²⁾
3	양평군 I 입야 1646㎡ 중 1/10 지분	7,134,966 ³⁾
4	양평군 J 입야 85㎡ 중 1/10 지분	1,411,792 ⁴⁾
5	양평군 K 입야 1092㎡ 중 1/10 지분	2,129,400 ⁵⁾
6	양평군 L 답 73㎡ 중 1/10 지분	137,970 ⁶⁾
	합계	300,733,470

2)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가액(원)
1	한국자산관리공사	156,350,056
2	원고	44,052,806 ⁷⁾
3	M	27,116,712 ⁸⁾
	합계	227,519,574

[인정근거] 갑 2 내지 8, 13, 15호증, 을 5 내지 7호증, 법원행정처장, N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

1) 2019. 2. 8. 기준 감정평가액 129,920,000원 × 공시지가 상승률(133400/118900)2)

단독주택 82,379,440원 +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 가차, 주차장 등) 54,836,000원 + 제시외 수목

2,940,000원 + 관정 4,000,000원3) 2019. 2. 8. 기준 감정평가액 6,254,800원 × 공시지가

상승률(38100/33400) 4) 2019. 2. 8. 기준 감정평가액 1,232,500원 × 공시지가

상승률(117800/100700) 5) 증여계약일과 가까운 2022년 공시지가(19,500원) 기준 6)

증여계약일과 가까운 2022년 공시지가(18,900원) 기준 7) 35,747,606원 + 25,692,115원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1. 12. 6.까지 연 14.06%의 비율로 계산한 8,513,453원 +

622,722원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7.까지 연 11.87%, 그 다음 날부터 2021. 12.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791,747원8)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21. 12. 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D이 2016년 C에 대하여 임의경매 2건(채권액 3,600만 원, 8,400만 원)을 신청함에 따라 C에 대한 채권을 G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고, 경매 취하를 위해 G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취하를 받았는데, 당시 위 대부회사가 채권이 더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D이 경매 신청한 채권 2건이 전부인 줄 알았으며, 이 사건 소송 서류의 송달이나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도 받지 못하여 원고의 양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D에서 대출받은 돈은 1~3채권 3건이고, C가 그 중 2, 3채권에 대하여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갑 5호증, 을 2호증), 1채권은 경매 취하와 무관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가 1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C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76,434,032원만 남아 있고, M에 대한 채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들어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2항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수정

목록

1. 경기 양평군 H 대 812㎡
2. 경기 양평군 H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98.54㎡, 끝.

